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-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0누31547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9. 12. 17. 선고 2019구합68367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4. 3.
판 결 선 고	2020. 5. 22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10. 23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6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,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4행의 "2018. 3. 2."을 "2018. 3. 23."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원고는 B가 2018. 2. 20. 현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억 9,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이 법원에서 갑 제9호증(2018. 2. 20. 전세계약서)을 새로이 제출하였다.[1]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가 있기 직전인 2018. 2. 20. B(임대인)와 E(임차인)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'임대차보증금 390,000,000원(계약금 40,000,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, 잔금 350,000,000원은 2018. 5. 30. 지급), 임대차기간은 인도일(2018년 5월 30일)부터 24개월(2020년 5월 29일까지)'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.

그러나 설령 B와 E 사이에 2018. 2. 20.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

1)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갑 제4호증(전세계약서)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, 갑 제4호증은 찢어진 것을 모아 복사한 것으로 원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에서 그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았다.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차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원본 계약서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4호증과 같은 내용의 갑 제9호증을 새로이 제출하였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6

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 신고를 할 때 첨부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(을 제1호증),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(부담부증여계약서)은 B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문서로서 그 실제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기재된 작성일자가 소급하여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, 2018. 4. 4.(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이자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이다.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전이자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전이다) 원고(임대인)와 E(임차인)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'임대차보증금 390,000,000원(계약금 40,000,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, 잔금 350,000,000원은 2018. 5. 30. 지급), 임대차기간은 인도일(2018년 5월 30일)부터 24개월(2020년 5월 29일까지)'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(을 제3호증), 위 임차인(E)은 2018. 4. 4.부터 2018. 5. 30.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합계 390,000,000원을 입금함으로써(갑 제2호증), B가 아니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위 임대차계약(2018. 2. 20.자)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(390,000,000원)을 수령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이나,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, 오히려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B에서 원고로 바뀜에 따라, B와 임차인(E) 사이의 위 2018. 2. 20.자 임대차계약을 대체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(임대인)가 되어 현 임차인(E)과 새로이 임대차계약(2018. 4. 4.자)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(B와 원고의 관계, B와 원고 사이에서 금전의 지급과 수령이 여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6

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B가 외국에 거주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한 적도 있는 점[2]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수령한 위 임대차보증금을 그 후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).

원고는 갑 제10호증을 제출하면서 '원고가 B에게 2018. 5. 24. 1억 원, 2018. 5. 30. 3 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무상취득(수증)한 것이 아니다'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,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2018. 5. 24. 거래내역은 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입금한 내역이고, 2018. 5. 30. 원고가 B에게 3억 원을 이체한 이후 바로 이체 취소가 되어 위 3억 원이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,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 한편, 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2018. 5. 30. 원고가 B에게 307,625,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,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'이 사건 증여 당시 B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'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.

따라서,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B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았음을(원고가 B의 이 사건 주택 임차인에 대한 390,000,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음을)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

2) 갑 제5호증 참조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6

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